

대구광역시 달성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

의안 번호	2650
----------	------

제출일자 : 2025. 3. 21.

제 출 자 : 달성군수



1. 제안이유

달성군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험수당 지급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의 적정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목적 (안 제1조)
- 나. 시험수당 지급대상 규정(안 제2조)
- 다. 여비 지급 규정(안 제3조)

3. 조례안 : 따로 붙임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제48조(※ 붙임)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기타사항
 - (1) 입법예고(2025. 2. 6. ~ 2. 26.)결과 : 의견 없음
 - (2)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
 - (3) 성별영향평가 : 해당사항 없음
 - (4) 부패영향평가 : 특기할 사항 없음
 - (5) 부서합의 : 해당사항 없음
 - (6) 비용추계서 : 해당사항 없음

대구광역시 달성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과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시험수당)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 지급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1.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, 심사, 선정, 편집,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
2. 면접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
3. 시험의 감독,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

②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시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

제3조(여비)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 계 법 령

□ 지방공무원 임용령

제48조(시험위원 등)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5항 단서에 따라 시험에 관한 출제, 채점, 면접시험, 실기시험, 서류전형과 그 밖에 시험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험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.

1. 해당 직무분야의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
2. 시험출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
3. 임용예정 직무에 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

② 제1항에 따라 시험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시험문제 작성상의 유의사항 및 서약서 등에 따른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
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2항을 위반함으로써 시험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시험위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명단을 모든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해당 시험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해당 시험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그 시험위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.

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5년간 그 사람을 이 영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지방공무원 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시험의 시험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없다.

⑤ 시험위원·시험관리관 및 시험편집요원의 수당과 여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위원·시험관리관·채점요원 및 시험편집요원의 수당과 여비는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.